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106
----------	-------

발의연월일 : 2025. 11. 11.

발 의 자 : 이재강 · 염태영 · 최혁진
박해철 · 윤후덕 · 박선원
김문수 · 김우영 · 김준형
김병주 · 박지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의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업의 시행승인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음.

또한, 공여구역 토지의 반환 및 반환공여구역토지의 처분은 국방부장관에게 있으며,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오염 및 예방대책 추진 권한은 환경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등 각 부문별로 주무부처가 상이하여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에 있어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설하여 반환공여구역의 개발과 지원사업을 종합적·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신설, 제7조

부터 제9조까지 및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강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1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의 설치) ① 반환공여구역의 개발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이하 “개발청”이라 한다)을 둔다.

② 개발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③ 개발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④ 개발청의 조직·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개발청장의 업무) 개발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 확정에 관한 사항

3. 제12조제4항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공여구역 개발 관련 사항

제6조의4(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개발청장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개발청장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에게”를 “개발청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은”을 “개발청장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은”을 “개발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은”을 “개발청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를 “개발청장이”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에게”를 “개발청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은”을 “개발청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은”을 “개발청장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관할”을 “개발청장 및 관할”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은 이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6조의2(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의 설치) ① 반환공여구역의 개발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이하 “개발청”이라 한다)을 둔다.</u> <u>② 개발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u> <u>③ 개발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u> <u>④ 개발청의 조직·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신 설></u>	<u>제6조의3(개발청장의 업무) 개발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u> <u>1.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u>

<u><신 설></u>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u>행정안전부장관에게</u> 제출하	<u>사항</u> 2. 제9조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 확정에 관한 사항 3. 제12조제4항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공여구역 개발 관련 사항 제6조의4(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개발청장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개발청장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 ----- ----- -개발청장에게-----
--	--

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② (생략)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침 또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종합계획의 확정 및 변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확정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

-. -----

-----.

② (현행과 같음)

③ 개발청장은-----

--.

제8조(종합계획의 확정 및 변경)

① 개발청장은-----

-----.

② 개발청장은-----

-----.

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① 시·도지사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2조(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③ 개발청장이-----

-----.

제9조(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①

-----개발청장에게-----
-----.

② 개발청장은-----

-----.

③ 개발청장은-----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① ~ ③ (생략)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u>관할</u>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 ⑧ (생략)	처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개발청장 및 관할</u>----- ----- -----. ⑤ ~ ⑧ (현행과 같음)
---	---